

2

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(법 §10의3②·영 §18의2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시가인정액 ○ <신 설> 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예외)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

□ 개정내용

-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

구분	무상취득(§10의2)	부당행위계산(§10의3)	
		현행	개정
원칙	시가인정액	시가인정액	(좌 동)
예외	시가표준액	규정 無	시가표준액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방세법 부칙 제3조(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조 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